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0

제출년월일 : 1999. 5. 28.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감면조례상의 해당 조항을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24조의3)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경상남도 세정13405-10019('99.1.11)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제99-57호

4. 본문 : 붙임 참조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조례 제24조의3의 신설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4조의3(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